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30 선고 2022가단566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D

피 고 E

소송대리인 F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7. 8.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56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고만 한다)은 F과 사이에 2009. 10. 8. 대출(한도)금액을 21,800,000원, 2010. 7. 7. 대출(한도)금액을 40,000,000원, 2011. 11. 22. 대출(한도)금액을 10,000,000원, 2013. 4. 25. 대출(한도)금액을 2,000,000원으로 하는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F이 위 대출계약에 따른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F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차1030호로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15. ‘G은행에게, F은 55,732,835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H과 연대하여 21,171,852원 및 그 중 19,400,000원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F에 대하여 2016. 5. 19. 확정되었다.

나. G은행은 2022. 3. 23.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F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G은행이 2022. 9. 22.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카기328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사건에서 2022. 10. 24. F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I의 소유였는데, I는 2017. 8. 26. 사망하였다. I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F, J, K, L, M이 있었는데, F의 법정상속지분은 2/13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56792호로 ‘2017. 8.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G은행이 F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5. 19. F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 G은행이 2022.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2022. 10. 24. F에게 도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은행의 F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행의 F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2009. 10. 8.자 대여금 채권의 최초 또는 연장된 변제기가 2015. 10. 8., 2010. 7. 7.자 대여금 채권의 최초 또는 연장된 변제기가 2015. 7. 7., 2011. 11. 22.자 대여금 채권의 최초 또는 연장된 변제기가 2015. 11. 22., 2013. 4. 24.자 대여금 채권의 최초 또는 연장된 변제기가 2014. 4.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22. 8.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G은행이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6. 3.경 F을 상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2016. 3. 15.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F에 대하여 2016. 5. 19.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던 2017. 8. 26. 당시 F의 재산상태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원고를 포함한 F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F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F의 사해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가 고령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85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른 상속인들, 즉 F을 포함한 피고의 자녀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F을 포함한 피고의 자녀들은 당시 F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F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법정상속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56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호

목 록

익산시 N 대 686㎡, 끝.

